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특례 신설〉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717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특례 신설 (안 별표 제218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대출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3. 12. 01.

다. 회 부 일 : 2023. 12. 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 표 제218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특례 신설 (안 별표 제218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특례 신설 - 장기사용허가 등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장기사용 허가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복합도시’란 우주항공분야와 관련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서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 등을 의미함.³⁾

3)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란 우주항공분야와 관련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우주항공청(이하 “우주항공청”이라 한다)이 입지한 지역으로서 우주항공청의 청사 건설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장기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주항공거점으로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우주항공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임.

둘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입주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⁴⁾,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경우 중복지원의 결과가 되는지 여부 및 특례부여가 이러한 세제 및 재정 지원에 비해 더 효과적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셋째, 국유재산 특례의 요건은 우주항공복합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특례대상 및 지역이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례요건이 다소 포괄적인 측면은 있다고 보임.

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46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구역의 입주 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입주 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
2. 고용보조금
3. 고용훈련보조금
4. 제품성능 검사비용에 관한 지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넷째, 개정안은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21년 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설정한 존속기한 원칙⁵⁾에 따라 그 기한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동 개정안 경우 특례 유형으로 '장기 사용허가 등'만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 근거법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서는 특례 유형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동 개정안에 따른 특례대상 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특례 규모 및 특례 신설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현재로서는 곤란하며, 동 법은 입주기업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세제 및 재정 지원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소지가 있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712호)

제47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입주 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투자진흥지구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 신 설 >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1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장기 사용허가등	2034. 12. 31.

문 의 처

02)6788-5151
